

[붙임1] 검사원의 자격

□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1조

1. 가스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자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*을 취득한 사람

* 가스산업기사, 가스기능사,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, 공조냉동기계기능사, 일반기계기사, 용접기사, 화공기사, 금속기사,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, 금속재료산업기사, 화공산업기사 등 동법 시행령 별표3 참조

2. 이공계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이공계대학의 화학·기계·금속 또는 안전관리분야의 학과를 졸업한 사람

3. 이공계대학의 화학·기계·금속 또는 안전관리분야 외의 학과를 졸업한 후 가스안전관리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

4. 이공계전문대학의 화학·기계·금속 또는 안전관리분야의 학과를 졸업한 후 가스안전관리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

5. 제4호 외의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공업고등학교 졸업자로서 그 졸업 후 가스안전관리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

6. 공업고등학교 외의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그 졸업 후 가스안전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